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수산물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진 추가(안 제27조)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의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영업자 제출 서류로 명시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 무작위표본검사 성적서 인정 (안 제28조)

용도변경 승인 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

다.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제품 용도전환 범위 확대(안 제34조)

그간 부적합 제품 중 곡류·두류만 사료용도 전환을 허용하였으나, 서류·과일류 등 식물성 원료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영업자의 폐기 부담을 완화함

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 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다만,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등 및 별표 9 제2호가목1)·2)·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을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해당하거나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곡류 또는 두류로서”를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4호나목 중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고, 같은 호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별표 13 II 제3호다목부터 제3호마목까지를 각각 제3호라목부터 제3호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II에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	-----	-----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1호서식 뒤쪽, 제25호서식 제1쪽 및 제2쪽, 제26호서식 앞쪽,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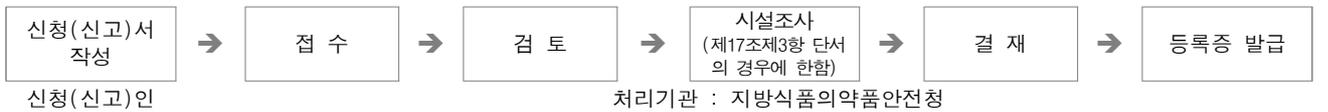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신청인 제출서류</p>	<p>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수수료</p> <p>소재지 변경: 26,500원</p> <p>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p> <p>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p>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No.	원재료·재질코드	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	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배합율 (%)	No.	원재료·재질코드	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	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배합율 (%)
1			.	.		11			.		.
2			.	.		12			.		.
...		

제조·가공 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	--	-------------

신고인 제출서류

-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다만, 용기·포장에 넣이지 아니한 수입식품등 및 별표 9제2호 가목 1)·2)·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구분유통증명서
 -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바.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차. 삭제 <2019. 6. 19.>
-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1쪽 “제품상태”란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제2쪽 원재료명은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 1) 제2쪽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여부는 신고제품구분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1개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복합원재료에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유형을 기재하고 그 제품유형을 100%기준으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라. 제2쪽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란에는 실제 현품에 표시한 한글표시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일자 표시 등 표시위치를 명시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위치에 별도 표시한 내용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릅니다.
- 바.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다만,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합니다)
- 사. 동일모산으로 동일일할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아.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능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유통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 유형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에 대해서는 품목을 기재하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은 유형을 기재합니다.
- 카.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품목분류											
검사종류		신고확인증발급방법									
현장 검사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요구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년	월	일	의뢰내용			
								년	월	일	성적번호
검사결과조치구분		적합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	년	월	일	수량 (단위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발급번호	년	월	일							
부적합최초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식품 등 [] 2: 식품첨가물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4: 축산물 []	처리기간	식품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 영업자)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 장소		(☎ - -)
반입일	년 월 일	선하증권(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처리부서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대표자	
	주 소		
제 조 가 공 업 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	성 명		
	주 소		
제 품 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HSK번호		유형 또는 품목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표시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이력번호 (수입쇠고기만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 품 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른 곡류 또는 두류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3. (생 략)

② ~ ④ (생 략)

--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

--

2의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